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69

발의연월일: 2021. 3. 12.

발 의 자:정동만・박형수・조경태

전봉민 • 황보승희 • 성일종

이종성ㆍ이 용ㆍ권영세

배준영・박대수・구자근

김영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 등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공공기관임.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으로 국민들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인 만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조사나 별도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들의 투기를 능동적으로 감시할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음.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적예방 활동의 근거도 전무한 실정임.

이에 공사가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

래 및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교육과 벌칙을 강화해 LH 임 직원이 미공개정보에 대한 활용 금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28조).

법률 제 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사는 소속 임원 및 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공사는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② (생 략)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공사는 소속 임원 및 직원
	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
	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u> <신 설></u>	④ 공사는 제1항의 이행을 위
	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
	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① (생 략)	제2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u>5천만</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u>윈</u>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